

고로쇠 수액(樹液) - 바르게 채취하면 일석삼조(一石三鳥)

-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-

산림청에서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(2~3월)를 맞이하여 수액의 과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나무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수액채취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.

- 이에 강화된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수액채취시기 이전인 2.2~2.10중에 수액채취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키로 하였고, 수액채취자 전원을 산림보호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하였다.
-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수액채취원 증표를 패용하고 복장을 통일하여 수액채취자임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고, 수액채취후 채취구멍을 살균제로 소독하여 상처를 치료하며, 울무·덧 등 엽구를 제거하고 수액채취후에는 채취용도구 등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도록 하는 한편
- 채취구멍의 크기는 지름 1.2cm이내, 깊이 1.5cm 이내로 제한하였고, 나무 한그루당 1년에 1회만 채취할 수 있으며 구멍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.
- 수액채취 행위는 100년 이상된 전통적인 행위로서 과거에는 소량씩 채취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수요 및 채취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채취시기(2~3월)만 되면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.

- 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사람이 헌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르게 채취하면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원(연간 약80억원)이 되고,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산불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에 효과적이다.
- 골리수(骨利樹, 뼈에 이로운 나무)라 불리는 고로쇠나무 등의 수액은 이뇨작용,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.
- 참고로, 작년 11월 지리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수액채취를 제한하려하자 수액채취자들이 반발함에 따라 산림청에서 수액채취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재하여 일단락된 바 있다.